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33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이언주·허성무·안도걸

박 정・신정훈・이개호

홍기원 · 소병훈 · 안태준

정진욱 · 김현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, 소형모듈원자로(SMR)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&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.

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, 시간 제약 없이 밤·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 리함.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 중되고 있음.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 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.

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

소형모듈원자로(SMR)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. 전 세계소형모듈원자로(SMR) 팹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될 전망임.

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(SMR)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,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&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(안제10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인공지능"을 "인공지능, 해상 풍력, 소형모듈원자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 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
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	세액공제) ①
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	
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	
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	
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	
31일(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	
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	
년 12월 31일)까지 발생한 해	
당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해서	
만 적용하며, 제1호 및 제2호를	
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	
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	
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	2
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	
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	

동 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 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 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 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(이하 "국가전략기술"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 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 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가. • 나. (생 략) 3. (생략) ② ~ ⑥ (생 략)

인공
지능, 해상풍력, 소형모듈원자
<u>로</u>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